

#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안	
번호	

發議年月日 : 93. 4.

發議者 : 金永洙議員  
外 5人

## 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함.
-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의회운영에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..... .....(현행과 같음)..... .....
1. 내무위원회 12명	1. (현행과 같음)
2. 사회·도시위원회 13명	2. (현행과 같음)
3. 운영위원회 <u>6명</u>	3. 운영위원회 <u>8명</u>